

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

<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>

◇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자를 위한
교육기관별 교육계획 안내

□ (교육근거) 「의료법」 제37조제3항 및 제4항,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
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(고시) 제2조

□ (교육구분)

- (선임교육)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교육
 - * 예시) A의원 재직시 선임교육을 받았으나 B병원으로 이직 후 책임자로 새로
선임되는 경우, B병원 책임자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선임교육을 받아야 함
- (보수교육) 선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전문성과 자질
향상을 위해 주기적(매 3년)으로 받는 교육

□ (교육대상)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중인 의료기관의 안전
관리책임자 중 '26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

- (선임교육)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
- (보수교육) '23년에 선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및
'95~'22년 동안 선임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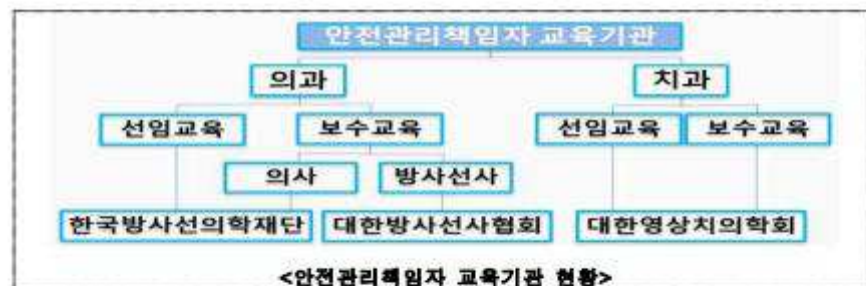
□ (교육시기)

- (선임교육)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
 - * 예시) 책임자 선임일이 '25.5.5.인 경우 '26.5.4.까지 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- (보수교육) 선임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
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
 - * 예시) 직전 교육 이수일이 '23.5.5.인 경우 '26.1.1.부터 '26.12.31.까지 보수
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□ (교육방법)

- (선임교육) 실시간 온라인 교육(zoom), 월 1회 이상 운영
- (보수교육) 동영상 교육(이러닝), 상시 운영
 - * 각 교육기관별 보수교육은 동영상 교육(이러닝)으로 전면 시행('25.11월)

□ (교육기관) 한국방사선의학재단(의과-선임, 의과-보수-의사), 대한영상
치의학회(치과-선임-보수), 대한방사선사협회(의과-보수-방사선사)



□ (교육계획) 의과/치과, 선임/보수교육에 따라 교육내용 일부를 달리 운영

<2026년 교육기관별 교육계획>

구분	의과			치과	
	선임	보수	보수	선임	보수
교육기관	한국방사선의학재단		대한방사선사협회	대한영상치의학회	
교육대상(직종)	의사, 방사선사	의사	방사선사	치과의사, 치과위생사	
교육방식	실시간 온라인	동영상	동영상	실시간 온라인	동영상
교육 일정 (불임1 참조)	1.18.~12.17. (13회)	상시	상시	1.25.~12.27. (13회)	상시
누리집 주소	www.radiationsafe.or.kr		https://kria. or.kr/url/se	www.dentalsafeimaging. or.kr	
문의 연락처	02-576-8458		02-576-6524	02-6328-0303	

* 교육기관별 안내문은 질병관리청 및 각 교육기관 누리집에 게시됨

※ 주의 사항

교육 구분(선임 또는 보수)에 따른 대상 교육을 잘못 이수한 경우' 안전관리
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안전관리책임자께서는
교육 종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* 예시: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,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한 경우

붙임1 교육기관별 선임교육 일정

□ [한국방사선의학재단] 선임교육 일정

회차	일자	회차	일자
1	1월 18일 (일)	8	8월 13일 (목)
2	2월 15일 (일)	9	9월 20일 (일)
3	3월 19일 (목)	10	10월 18일 (일)
4	4월 19일 (일)	11	11월 15일 (일)
5	5월 31일 (일)	12	12월 6일 (일)
6	6월 14일 (일)	13	12월 17일 (목)
7	7월 12일 (일)	-	-

* 시간: 13:30 ~ 17:00 / 등록인원: 의사·방사선사 각 250명

□ [대한영상치의학회] 선임교육 일정

회차	일자	회차	일자
1	1월 25일 (일)	8	8월 30일 (일)
2	2월 22일 (일)	9	9월 20일 (일)
3	3월 29일 (일)	10	10월 25일 (일)
4	4월 26일 (일)	11	11월 29일 (일)
5	5월 31일 (일)	12	12월 17일 (목)
6	6월 25일 (목)	13	12월 27일 (일)
7	7월 26일 (일)	-	-

* 시간: (일요일) 13:20 ~ 16:50, (목요일) 17:20 ~ 20:50 / 등록인원: 회차당 250명

※ 보수교육은 이러닝 교육으로, 연중 상시 운영.

붙임2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규정

○ 「의료법」

제37조(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)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**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**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**하고,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,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**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**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”이라 한다)가 실시하는 **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** 받아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**안전관리책임자 교육**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**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**한다.

○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(고시)

제2조(안전관리책임자 교육) ① 「의료법」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선임교육: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(이하 “안전관리책임자”라 한다)이 **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**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

2. 보수교육: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**선임교육을 이수한 후**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**주기적으로**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.

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**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, 그 후에는 3년(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**